

시립보라매청소년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심사보고서

의안 번호	3531
----------	------

2026년 3월 13일
행정자치위원회

1. 심사경과

- 가. 제출자 : 서울특별시장
나. 제출일 : 2026년 2월 9일
다. 회부일 : 2026년 2월 12일
라. 상정일 : 제334회 서울특별시의회 임시회 제3차 행정자치위원회
2026년 3월 11일 상정·의결(원안 가결)

2. 제안설명의 요지

(제안설명자 : 평생교육국장 정진우)

가. 제안이유

- 「청소년 기본법」 제18조 및 「청소년활동 진흥법」 제11조에 의하여 설치·운영되고 있는 청소년시설인 시립강북청소년센터의 위탁기간이 2026. 6. 30. 만료 예정임에 따라,
- 청소년 사업 관련 법인의 전문성과 노하우를 활용하여 다양한 청소년 활동 프로그램을 개발·운영하고, 이용자의 만족도를 제고하는 등 안정적이고 효율적으로 청소년센터를 운영하기 위한 민간위탁을 추진하고자,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4조의3에 의거 서울특별시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함.

나. 주요내용

○ 위탁사무명 : 시립보라매청소년센터 운영

○ 민간위탁 추진근거 및 추진 필요성

- 민간위탁 추진근거

- 「청소년 기본법」 제18조(청소년시설의 설치·운영)
- 「청소년활동 진흥법」 제16조(수련시설 운영의 위탁)
-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27조(행정재산의 관리위탁)
- 「서울특별시 청소년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10조(권한의 위임 또는 위탁)
-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4조(민간위탁 사무의 기준), 제6조(민간위탁 사무내용), 제8조(수탁기관의 선정), 제11조(협약체결 등)

- 민간위탁 추진 필요성

- 시립보라매청소년센터는 「청소년활동 진흥법」 상 청소년수련활동을 주요 기능으로 하는 시설로,
- 창의적 체험활동·진로직업 탐색 등 청소년센터를 활용한 학교연계 수업과 방과 후 활동 등을 통해 청소년에 대한 높은 이해와 지식을 바탕으로 청소년 요구에 적절히 대응하고, 다양한 프로그램을 개발·운영하여 청소년에게 질 높은 서비스를 제공할 것이 요구되고 있음.
- 또한 「청소년 기본법」은 지방자치단체가 민간의 전문성과 효율성을 활용할 수 있도록 청소년단체에 민간위탁을 할 수 있는 근거 규정을 마련하고 있음.
- 따라서 시설을 효율적으로 운영하면서 청소년의 눈높이에 맞는 프로그램을 개발·운영할 수 있고, 청소년 관련 전문적인 지식이 풍부하며 현장 경험이 많은 청소년단체에 위탁하여 운영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됨.

○ 위탁 사무 내용

- 청소년을 위한 다양한 체험활동 프로그램 개발·운영
- 청소년의 신체적·정신적 건강과 역량 강화를 위한 다양한 청소년활동사업
- 청소년의 복지증진 및 자립 지원 강화를 위한 청소년 상담사업
- 학교, 지역사회와 연계한 청소년 지원사업
- 청소년센터 관리·운영(시설물, 장비 등 포함)
- 그 밖에 청소년센터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등

○ 위탁시설 개요

- 소재지 : 서울시 동작구 여의대방로20길 61
- 개관일자 : 1986. 12. 9.
- 시설규모 : 대지 5,100㎡ / 연면적 5,260㎡
- 주요시설 : 청소년전용공간 청개구리, 항공우주체험센터, 마음폴, 웹툰실, 청소년희망 공간 카페 달다, 스포츠교실 등
- 이용대상 : 청소년 및 시민
- 위치도



- 민간위탁 기간 : 3년(2026.7.1. ~ 2029.6.30.)

- 수탁자 선정방식 : 공개모집

- 소요예산 및 산출근거
 - 소요예산 : 3,125백만원('26년)
 - 산출근거
 - 인건비 1,256백만원, 운영비 244백만원, 사업비 1,211백만원, 사업외지출 및 기타 414백만원

- 민간위탁운영평가위원회 심의결과 : 적정

3. 참고사항

- 가. 관계법령 : 「청소년 기본법」, 「청소년활동 진흥법」,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서울특별시 청소년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 다. 합 의 : 해당 없음.

4.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수석전문위원 김태한)

- 본 동의안은 ‘(재)서울가톨릭청소년회’에 위탁하여 운영 중인 시립보라매 청소년센터(이하 ‘보라매청소년센터’)의 위탁기간이 2026년 6월 30일 만료될 예정으로, 향후 3년간(2026.7.1.~2029.6.30.) 본 센터를 새로운 단체에 위탁·운영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의회의 동의를 얻으려는 것임.

〈 ‘시립보라매청소년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의 개요 〉

- **위탁사무명** : 시립보라매청소년센터 운영
- **위탁사무**
 - 청소년을 위한 다양한 체험활동 프로그램 개발·운영
 - 청소년의 신체적·정신적 건강과 역량 강화를 위한 다양한 청소년활동사업
 - 청소년의 복지증진 및 자립 지원 강화를 위한 청소년 상담사업
 - 학교, 지역사회와 연계한 청소년 지원사업
 - 청소년센터 관리·운영(시설물, 장비 등 포함)
 - 그밖에 청소년센터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등
- **소재지** : 서울시 동작구 여의대방로20길 61
- **시설규모** : 대지 5,100m² / 연면적 5,260m²
- **개관일자** : 1986. 12. 9.
- **주요시설** : 청소년전용공간 청개구리, 항공우주체험센터, 마음폴, 웹툰실, 청소년희망 공간 카페 달다, 스포츠교실 등
- **위탁기간** : 3년(2026.7.1. ~ 2029.6.30.)
- **수탁자 선정방식** : 공개모집
- **소요예산** : 3,125백만원(2026년)
 - 산출근거 : 인건비 1,256백만원, 운영비 244백만원, 사업비 1,211백만원, 사업외지출 및 기타 414백만원
- **민간위탁운영평가위원회 심의결과** : 적정

- 평생교육국은 시설의 효율적 운영과 다양한 청소년 프로그램 제공 등을 위해 민간위탁의 필요성을 제출하고 있으며, 본 동의안의 위탁사무는 청소년에 대한 전문지식이나 청소년들에게 활동거리를 효율적으로 제공하는 역량이 요구된다는 점에서 민간위탁이 가능할 것으로 보여짐.
- 보라매청소년센터는 1986년 개관하여, 2006년부터 20년간 재단법인 서울가톨릭청소년회(이하 '가톨릭청소년회')에서 운영하고 있으며, 지상 2층, 2개동의 시설로, 현원 24명(정규직 19명, 계약직 5명, 2026.2.26. 기준)의 직원이 31억 2천 5백만원(2026년)의 예산으로 6개 분야, 20개 사업, 105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음.

〈 보라매청소년센터의 민간위탁 현황 〉

구분	위탁기간	수탁기관	선정방법
최초위탁	'86.11.01.~'06.06.30.	재단법인 영원한 도움의 성모회	
2차 위탁	3년 ('06.07.01.~'09.06.30.)	재단법인 서울가톨릭청소년회	공개모집
3차 위탁	2년 ('09.07.01.~'11.06.30.)	재단법인 서울가톨릭청소년회	재계약
4차 위탁	3년 ('11.07.01.~'14.06.30.)	재단법인 서울가톨릭청소년회	공개모집
5차 위탁	2년 ('14.07.01.~'16.06.30.)	재단법인 서울가톨릭청소년회	재계약
6차 위탁	3년 ('16.07.01.~'19.06.30.)	재단법인 서울가톨릭청소년회	공개모집
7차 위탁	2년 ('19.07.01.~'21.06.30.)	재단법인 서울가톨릭청소년회	재계약
8차 위탁	3년 ('21.07.01.~'24.06.30.)	재단법인 서울가톨릭청소년회	공개모집
9차 위탁	2년 ('24.07.01.~'26.06.30.)	재단법인 서울가톨릭청소년회	재계약

〈 보라매청소년센터의 정현원 현황 〉

(단위 : 명, 2026.2.26. 기준)

구분	총계	정규직									비정규직		
		소계	1급	2급	3급	4급	5급	6급	7급	기능, 고용	소계	계약	기타 (축탁직)
정원	30	30	1	1	1	3	4	9	6	5	-	-	-
현원	24	19	1	1	-	1	4	8	3	1	5	5	-

〈 보라매청소년센터의 사업구성 〉

연번	분야	주요 사업 내용	계획
	총계	6개 분야, 20개 사업, 105개 프로그램	
1	목적사업	참여 권위 체험활동 진로교육 지역연계 안전환경 학습공간 문화활동 등	12개 사업, 56개 프로그램
2	상담지도사업	통합상담, 통합지원	2개 사업, 12개 프로그램
3	생활체육사업	생활교육(보라매스포츠교실)	1개 사업, 1개 프로그램
4	기타사업	기타, 대관(공연장, 강의실 등), 홍보(센터 홍보 등)	3개 사업, 7개 프로그램
5	보조금사업	보조금사업사랑의 교실 동작구 청소년시설 처우개선비	1개 사업, 2개 프로그램
6	특별지원사업	지원프로그램서울유스데이 찾아가는센터 방과후 아카데미 등	1개 사업, 27개 프로그램

〈 보라매청소년센터의 총 세입세출예산 현황 〉

(단위: 천원, %)

구분	예산과목	2025년	구성비율	2026년(안)	구성비율	
세입 예산	계	3,478,379	100%	3,125,388	100%	
	위탁금	민간위탁금	1,523,240	44%	1,542,046	49%
		민간위탁사업비	82,587	2%	0	0%
	보조금	국비보조금	13,300	1%	2,000	0%
		시비보조금	96,500	3%	0	0%
		구비보조금	156,100	4%	13,200	0%
		기타공모사업보조금	120,300	3%	0	0%
	사업수입	시설이용료 수입	70,241	2%	185,340	6%
		사업별수입	729,134	21%	937,042	30%
	사업외수입	법인전입금	220,000	6%	60,000	2%
		이월금	119,717	3%	38,500	1%
		기타잡수입	347,260	10%	347,260	11%
	세출 예산	계	3,478,379	100%	3,125,388	100%
인건비		1,203,235	35%	1,255,937	40%	
운영비		182,700	5%	244,120	8%	
사업비		1,615,974	46%	1,210,967	39%	
사업외지출		340,000	10%	340,000	11%	
예비비		30,000	1%	30,000	1%	
지난년도지출		75,513	2%	0	0%	
반환금		25,093	1%	38,500	1%	
일반관리비		1,315	0%	1,315	0%	
이윤		0	0%	0	0%	
부가가치세		4,549	0%	4,549	0%	

- 본 동의안과 함께 제출된 성과보고서는 2024년도의 성과를 2025년 9월에 평가한 내용으로, 의회가 2026년 상반기의 보라매청소년센터를 걱정하게 살펴보고, 위탁 여부를 판단할 수 있도록 보다 적시성을 확보한 자료 제출이 요망된다고 하겠음.

〈 보라매청소년센터 운영평가 〉

□ 운영평가 개요

- 수행기관 : 서울시(청소년정책과) 및 전문조사기관[한국정보경영평가(주)]
- 평가기간 : 2024년도(실시기간 2025.3.~9.)
- 평가범위 : 시설 및 사무위탁기간 내 운영실태 전반
- 평가방법 : 서면평가 및 현장평가 병행 ※ 만족도 조사결과 포함
- 평가결과 : 89.13점(100점 만점)

- 시립청소년시설 운영평가(2024.1.~12. 성과) 결과 사업 운영계획에 세부 환경 분석 결과 반영, 조직 체계 및 사무분장 개선, 직원 근속 유지 및 업무적응력 제고 노력, 성과 보상 강화 및 업무 분위기 개선, 예산 집행률 제고 등과 같은 사안에 대해 개선요청 사항이 있었음.

〈 시립청소년시설 운영평가 중 개선요청 사항 〉

- 청년 인구 및 다문화가정이 많은 입지를 고려하고 개소 이래 주민 수요를 반영하여 추진해 온 대표사업들을 운영하고 있는 내용이 간략히 제시되어 있으나, 보다 세부적으로 SWOT 분석이나 PEST 분석 같은 환경분석 결과 기반의 사업 운영계획을 수립할 필요가 있음
- 업무분석 및 조직진단을 통해 조직체계 및 사무분장을 개선해 나갈 여지가 있어 보임
- (전년도 7명, 평가년도 4명의 이직자가 발생) 직원 근속 유지를 위해 면담을 통한 제도 개선 환류 및 신입직원 업무적응력 제고를 위한 업무매뉴얼의 구체화·현행화가 요구되며, 성과에 대한 보상제도 강화와 함께 업무 분위기가 개선될 수 있도록 조율이 필요해 보임 (서울시의 요청으로 보라매공원에서 추진되는 행사들에 대한 지원을 겸하고 있어 업무량이 기존 센터보다 많은 것으로 확인됨)
- 연장근로 감축 및 연차사용률 제고 필요
- 예산 집행 모니터링 및 관리 강화를 통해 집행률 제고를 위한 노력이 필요하며, 예산 활용도를 높일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야 함

- 운영평가 결과에서 보라매청소년센터의 사업 운영계획에 세부 환경분석 (SWOT, PEST 등) 결과 반영, 조직 및 인력 운영 개선(조직 체계 및 사무분장 개선, 직원 근속 유지, 성과 보상 강화 및 업무 분위기 개선 등)이 필요하다고 제안하고 있는바, 청소년시설의 외부환경(인구사회학적 요소, 주민 수요, 기술변화 등)에 대한 객관적인 분석을 통한 사업 운영계획을 수립하고, 조직 및 인력 운영 개선을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고 하겠음.
- 다만, 보라매청소년센터의 2024년 운영평가 결과(89.13점)는 최근 평가결과('22년 85.95점, '23년 86.40점)와 비교할 때, 해마다 점수가 상승(85.95점 → 86.40점 → 89.13점)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시설운영 및 관리를 위한 노력을 지속적으로 시행하고 있는 것으로 보여짐.
- 보라매청소년센터의 최근 3년간 지도·점검 결과는 회계 처리, 채용 관련 절차 미시행, 개인정보 관리 미흡 등 시설 운영에 있어 기본적인 사항이 반복 지적되고 있는바, 20년간 본 시설을 운영한 수탁기관의 '청소년시설 운영에 대한 전문성'에 대해 의문이 발생하며,
- 추후 민간위탁 기관 선정시 청소년시설 운영에 전문성을 확보한 단체를 선발할 수 있도록 노력이 요구된다고 하겠음.

< 최근 3년간 보라매청소년센터의 지도·점검 결과 >

연 도	지적사항	조치결과
2023년	수의계약 구비서류 미흡	조치 완료
	경력산정 시 전력 조회 미시행	조치 완료
2024년	예산의 전용 절차 미흡	조치 완료
	강사료 지급 관련 개인정보 활용동의서 내용 미흡	조치 완료
2025년	인사위원회 개인정보보호 누락 및 관리 미흡	조치 완료

- 한편, 보라매청소년센터는 2026년 기준 목적사업(참여, 권리, 체험활동, 진로교육, 지역연계, 안전환경, 혁신공간, 문화교류 등), 상담지도사업(통합상담, 통합지원), 특별지원사업(서울유스데이, 찾아가는센터, 방과후 아카데미 등) 등 6개 분야, 20개 사업, 105개 프로그램을 추진하고 있으며, 2024년~2025년 청소년이용률은 「청소년수련시설 관리·운영지침」 상 최소 이용률인 60% 이상을 충족하고 있음.

〈 보라매청소년센터의 사업 실적 〉

(단위 : 명/ '25.11.30. 기준)

연도	계획	실적	달성률	청소년실적	청소년이용률
2024	247,177	330,123	134%	293,972	89%
2025	284,194	259,051	91%	232,328	90%

※ 성평등가족부, 「2026년도 청소년수련시설 관리·운영 지침」, 57p

<p>다. 이용자 관리</p> <p><input type="checkbox"/> 업무내용</p> <p>2) 청소년이용률 관리 및 보고</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청소년수련시설의 <u>청소년이용률을 전체 이용자 대비 60%이상으로 유지</u> 될 수 있도록 지도·관리하여야 함
--

- 마지막으로 서울시 민간위탁 운영평가위원회(2026년 제1차, '26.1.15. 개최) 회의록에서 '특정 법인들의 장기 수탁 운영 문제'를 지적하며, 개선 방안(다른 평가기준을 적용한 센터 시범운영, 신규 기관 인센티브 제공 등)을 구체적으로 언급하고 있는바,
- 이에 대한 평생교육국의 의견과 고착화된 특정 법인(보라매청소년센터의 경우 가톨릭청소년회에서 20년간 수탁운영)들의 장기 수탁 운영 문제를 해결할 의지가 있는지 확인이 필요하다고 하겠음.

〈 2026년 제1차 민간위탁 운영평가위원회 회의록('26.1.15.) 〉

< 000 위원 >

- 흔히 말하는 고인물 현상이라고 하는데 특정 법인들이 계속해서 센터 수탁 운영을 이어가는 현상에 대해서 많은 문제 제기들이 있었는데 그걸 해결할 수 있는 방안으로 모색 중인 게 혹시 있으실까요?

<소관부서[청소년정책과]>

- 예 저희가 그런 문제점들에 대해서 매년 연말에 미리 사업 계획을 받고서 면밀히 검토를 해서 문제점들이 있을 때 지적을 해서 개선할 수 있는 것들을 하고, 예산을 저희가 배정하고 운영하면서 운영평가를 통해서 미진한 부분을 저희가 평가를 받잖아요. 그런 부분은 저희가 그쪽에 얘기를 해서 부족한 점이 다 반영이 될 수 있도록 사업 계획을 통해서 확인하고 승인하고 있습니다.

< 000 위원 >

- 저는 현장에 있으면서 느끼는 게 젊은 청소년 지도사들이 불만이 되게 많거든요. 그리고 이 친구들이 굉장히 역량도 있어서 기존의 큰 재단이나 법인 안 끼고 자기 들끼리 의기투합해서 이런 센터 운영할 수 있고 심지어 더 잘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이 분야 특성상 어떤 재단의 소속으로 한 번 일을 시작하면 그 재단의 눈치를 볼 수밖에 없는 구조더라고요. 그래서 열심히 일하고 잘해도 그 재단 내에서의 수직적인 경력 이동만 상상하게 되는 이 구조가 발생을 하다 보니까 악순환인 것 같아요.
- 그래서 제 생각에는 이 젊은 청소년 지도사들이 주축이 돼서 서울시에서 몇 가지 센터를 시범 사례처럼 원래 해오던 법인들의 전문성만 보지 않고 다른 평가 기준을 기관 선정하실 때 조금 참조하셔서 한번 운영해 보고 비슷하게 되면은 기존에 고착화된 재단들이 슬림하게 변할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새로운 어떤 기관이 출연했을 때 조금더 인센티브를 주시는 방안들을 좀 고려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소관부서[청소년정책과]>

- 저희가 그 부분은 공고를 내기 전에 그런 의견을 듣는 과정을 한번 거치고 그거를 어떻게 반영할 수 있는지 고려해보겠습니다

5. 질의 및 답변요지 : 생략.

6. 토론요지 : 없음.

7. 심사결과 : 원안 가결(재석위원 6명, 전원찬성).

8. 소수의견의 요지 : 없음.

9. 기타 필요한 사항 : 없음.

시립보라매청소년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의안 번호	3531
----------	------

제출년월일 : 2026년 2월 9일
제출자 : 서울특별시

1. 제안이유

- 가. 「청소년기본법」 제18조 및 「청소년활동진흥법」 제11조에 의하여 설치·운영되고 있는 청소년시설인 시립보라매청소년센터의 위탁기간이 2026. 6. 30. 만료 예정임에 따라,
- 나. 청소년 사업 관련 법인의 전문성과 노하우를 활용하여 다양한 청소년 활동 프로그램을 개발·운영하고, 이용자의 만족도를 제고하는 등 안정적이고 효율적으로 청소년센터를 운영하기 위한 민간위탁을 추진하고자,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4조의3에 의거 서울특별시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함.

2. 주요내용

- 가. 위탁사무명 : 시립보라매청소년센터 운영
- 나. 민간위탁 추진근거 및 추진 필요성
- 민간위탁 추진근거
 - 「청소년기본법」 제18조(청소년시설의 설치·운영)
 - 「청소년활동진흥법」 제16조(수련시설 운영의 위탁)
 -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27조(행정재산의 관리위탁)
 - 「서울특별시 청소년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10조(권한의 위임 또는 위탁)
 -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4조(민간위탁 사무의 기준), 제6조(민간위탁 사무내용), 제8조(수탁기관의 선정), 제11조(협약체결 등)

○ 민간위탁 추진 필요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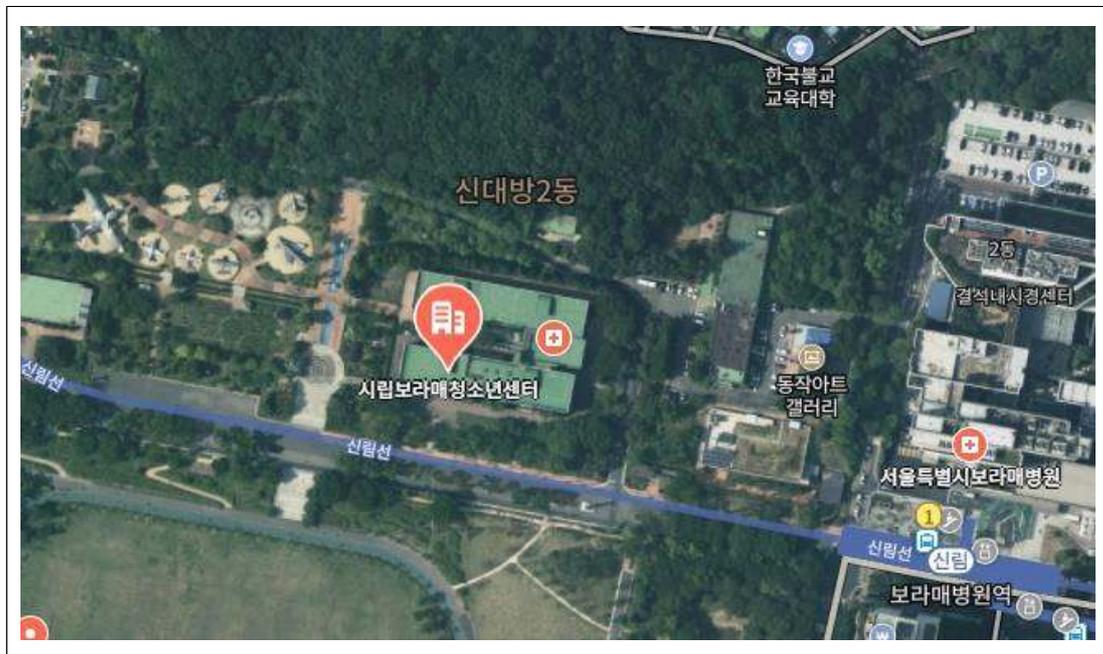
- 시립보라매청소년센터는 「청소년활동 진흥법」 상 청소년수련활동을 주요 기능으로 하는 시설로,
- 창의적 체험활동·진로직업 탐색 등 청소년센터를 활용한 학교연계 수업과 방과 후 활동 등을 통해 청소년에 대한 높은 이해와 지식을 바탕으로 청소년 요구에 적절히 대응하고, 다양한 프로그램을 개발·운영하여 청소년에게 질 높은 서비스를 제공할 것이 요구되고 있음.
- 또한 「청소년 기본법」은 지방자치단체가 민간의 전문성과 효율성을 활용할 수 있도록 청소년단체에 민간위탁을 할 수 있는 근거 규정을 마련하고 있음.
- 따라서 시설을 효율적으로 운영하면서 청소년의 눈높이에 맞는 프로그램을 개발·운영할 수 있고, 청소년 관련 전문적인 지식이 풍부하며 현장 경험이 많은 청소년단체에 위탁하여 운영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됨.

다. 위탁 사무 내용

- 청소년을 위한 다양한 체험활동 프로그램 개발·운영
- 청소년의 신체적·정신적 건강과 역량 강화를 위한 다양한 청소년활동사업
- 청소년의 복지증진 및 자립 지원 강화를 위한 청소년 상담사업
- 학교, 지역사회와 연계한 청소년 지원사업
- 청소년센터 관리·운영(시설물, 장비 등 포함)
- 그 밖에 청소년센터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등

라. 위탁시설 개요

- 소재지 : 서울시 동작구 여의대방로20길 61
- 개관일자 : 1986. 12. 9.
- 시설규모 : 대지 5,100 m^2 / 연면적 5,260 m^2
- 주요시설 : 청소년전용공간 청개구리, 항공우주체험센터, 마음풀, 웹툰실, 청소년희망 공간 카페 달다, 스포츠교실 등
- 이용대상 : 청소년 및 시민
- 위치도



마. 민간위탁기간: 3년(2026.7.1. ~ 2029.6.30.)

바. 수탁자 선정방식 : 공개모집

사. 소요예산 및 산출근거

- 소요예산 : 3,125백만원('26년)
- 산출근거
 - 인건비 1,256백만원, 운영비 244백만원, 사업비 1,211백만원, 사업외지출 및 기타 414백만원

아. 민간위탁운영평가위원회 심의결과 : 적정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청소년 기본법」 제18조(청소년시설의 설치·운영)

-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청소년시설을 설치·운영하여야 한다.
- ③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라 설치한 청소년시설을 청소년단체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 「청소년활동 진흥법」 제16조(수련시설 운영의 위탁)

- 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제11조제3항에 따라 허가를 받은 수련시설 설치·운영자는 수련시설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청소년단체에 그 운영을 위탁할 수 있다.

○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27조(행정재산의 관리위탁)

-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행정재산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자치단체 외의 자에게 그 재산의 관리를 위탁(이하 "관리위탁"이라 한다)할 수 있다.

○ 「서울특별시 청소년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10조(권한의 위임 또는 위탁)

- ① 시장은 별표 1의 청소년시설에 대한 운영을 자치구청장에게 위임하거나 청소년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이 경우 청소년시설의 운영 및 재정여건을 고려하여 예산의 범위 안에서 운영비 등을 지원할 수 있다.
- ② 제1항에 따른 위탁기간은 3년 이내로 하되, 한 번만 갱신할 수 있다. 이 경우 갱신기간은 2년 이내로 한다.

○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4조(민간위탁 사무의 기준), 제6조(민간위탁 사무내용), 제8조(수탁기관 선정), 제11조(협약체결 등)

- 제4조(민간위탁 사무의 기준) ① 시장은 법령이나 조례에 정한 시장의 소관사무 중 조사·검사·검정·관리업무 등 시민의 권리·의무와 직접 관계되지 아니하는 다음의 사무를 민간위탁 할 수 있다.
- 제6조(민간위탁 사무내용) 제4조에 따라 민간에 위탁할 수 있는 사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노인·장애인·여성·청소년·노숙인 등 복지시설의 운영에 관한 사무
- 제8조(수탁기관의 선정) ① 수탁기관의 선정은 공개모집을 원칙으로 하며, 시장은 수탁기관 선정을 위한 공고시에 선정기준 및 배점 등을 공개하여야 한다.
- 제11조(협약체결 등) ① 시장은 사무를 위탁할 경우 수탁기관과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된 위탁협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1. 수탁기관의 성명 및 주소
 2. 위탁기간
 3. 위탁사무 및 그 내용
 4. 시설의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
 5. 노동자에 대한 고용·노동조건 개선노력
 6. 지도·점검, 종합성과평가 등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위탁사무의 수행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작성자 : 평생교육국 청소년정책과 장현주 (☎02-2133-4124)